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3401 지방세 재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가. 원고는 2001. 9. 10. 현재 피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 합계 3,788,96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1. 9. 10. 원고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국세징수법이 2007. 12. 31. 개정됨에 따라 2008. 1. 1.부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피고의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개정된 국세징수법 또는 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무효화'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구 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3. 2. 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치주의의 원리와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채권이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는 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가 2008. 2. 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공포·시행되었는데,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즉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 압류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개정 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이 정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정 후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개정 후 법령은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비록 개정 법령의 취지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있다고는 하나, 개정 후 법령을 소급적용 하는 경우 사실상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 해온 일반 국민보다 체납자를 우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이로써 일반 국민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 압류금지 재산을 어떤 것으로 정할 것인지는 실증적으로 존재하는 선험적인 무엇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수준을 고려한 일반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정책상의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른 법치주의의 원리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서까지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유성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판사 김영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0-26

(별지)

목록

원고가 제3채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계약번호 B)과 관련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